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최근 금융위원회는 A생보사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관련 제재안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와의 용역 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러한 판단에는 제재 근거 법규인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자산거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최근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반적 거래 조건에 비추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해당 판결은 전산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의 의미와 입증책임 등 주요 요건에 대해 판시함
 - 첫째,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의 거래'는 금지행위로 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산에 부실이 초래될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자산의 매매'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본 것임
 - 둘째,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의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정상가격의 합리적 산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봄
- 해당 판결은 (i)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열거된 거래 유형의 개념적 표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ii) 정상가격의 의미를 규명하고 정상가격의 합리적 산출에 관한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밝힌 점에서 유의미함
 -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정상가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법령에 구체적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 서론

- 최근 금융위원회는 A생보사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관련 제재안을 확정하면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계열회사와의 용역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지 않기로 함¹⁾
 - 종합검사 당시 해당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의뢰한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의 완성이 지연되었음에도 용역을 진행한 계열회사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됨
 - 2020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주주와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 보고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제재안을 의결함
 - 그러나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제재 근거인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이하, '본건 규제'라 함)의 금지 범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²⁾

-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 간의 거래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나,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 자산에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건 규제를 포함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³⁾
 - 기본권 제한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그간 본건 규제에 관해서는 확립된 판례 등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어 위 제재건과 같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던 중 본건 규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지되는 자산거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⁴⁾(대상판결)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침⁵⁾
 - 해당 판례는 본건 규제에서 금지하는 자산거래에서 '자산'의 의미, '자산거래'의 포섭 범위 및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본건 규제의 주요 요건에 대해 상세히 판시함
 - 이에 본고에서는 본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1. 26),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p. 1~2 참조

2) 따라서 과징금 등의 제재는 부과하지 않되, 향후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함

3)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 비율 규제, 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4) 서울고등법원 2020누38159 판결(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1. 26),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p. 2 참조



2.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i) 보험회사가 (ii) 직·간접적으로 (iii) 보험회사의 대주주(자회사 제외⁶⁾)와 (iv)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⁷⁾ (v) 자산의 무상양도 등 법령에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수범자) 금지의무의 주체가 보험회사임은 문언상 자명하며, 대주주와 공모 또는 공동행위 여부는 요건이 아님
 - (간접행위) 대주주와 직접 자산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자산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됨
 - (대주주의 범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⁸⁾을 포함(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괄호)함
 - (거래조건) 시행령은 이를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영 제5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로 구체화함
 - (행위유형) 금지행위는 (i) 자산의 무상양도, (ii)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됨

〈표 1〉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위반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내지 신용공여액 이하의 과징금(법 제196조 제1항 제7호)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00조 제4호)이 따르며, 보험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도 가능함

6)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의 대주주에서는 제외되나, 동법 제116조 제1호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두고 있음
 7) 문언상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이러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을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불리한 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라 사료됨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대상판결 검토⁹⁾¹⁰⁾

가.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 손해보험회사인 원고는 원고와 계열회사 간의 2014~2016년경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구매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2018년경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음
 - (전산용역거래) 원고는 2011년경 IT 서비스 회사인 계열회사와 정보시스템 운용 용역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매년 연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음
 - 금융감독당국은 원고가 2014년과 2015년 연간 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인상요인 없이 전년 대비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와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함
 - (김치구매거래) 원고는 2014~2016년경 임직원 복리후생 또는 영업 관련 시상품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같은 계열회사 소유 컨트리클럽에서 17억 원 상당의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함
 -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액은 주요 백화점에서 유사 기간 판매된 '종갓집김치' 가격보다 약 8억 원 높은 가격으로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한 것이라 보았음
- 원고는 금융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제1심인 행정법원은 전산용역거래 관련 처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취소함
 -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 고등법원은 김치구매거래 관련 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이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고등법원 판결대로 확정됨
-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i) 전산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ii) 김치와 같은 통상적 동산이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이었음

나. 전산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법 문언과 '자산의 매매'의 개념 정의상 용역거래는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지원행위를 금지한 본건 규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용역의 거래라 하더라도 규제대

9) 대상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8구합88951 판결)를 전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됨. 본고에서는 제1심 판결서의 내용 및 제2심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을 일체로 대상판결로 지칭함

10) 이하의 검토 내용은 전반적으로 양승현(2021),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3호, p. 121~154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함

- 원고와 피고의 세부적 주장은 다음과 같음

〈표 2〉 원고의 주장 vs.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① 법 문언상 '자산의 매매'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① 법 문언은 '용역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② 피고는 과거 규제 대상에 '용역의 제공'을 추가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② 과거 법 개정 추진은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한 확인적 차원에 불과했음
③ 용역은 회계처리기준상 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음	③ 보험업법상 '자산'을 반드시 회계처리기준의 용역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부당지원행위는 보험업법과 규정 형식이 상이함	④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도 해석으로 '용역의 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해오다 후에 법률에 이를 명시함
⑤ 전산용역거래는 '자산'이 아니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⑤ 무형의 자산인 용역의 구매비용을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고, 현금 역시 자산에 해당됨
	⑥ 과거 대법원은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¹¹⁾

○ 법원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의 매매'란 유가증권·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자산의 이전 없는 순수한 용역의 거래는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 (문언해석) '용역의 거래'를 '자산의 매매'에 포함하는 것은 '자산', '매매'의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 용법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며, 금지행위 유형으로 자산의 '무상제공', '매매' 등만 열거할 뿐, '용역의 거래'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보험업법 개정 시도) 과거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취지 및 입법자료에 의하면 '자산의 매매'가 '용역의 제공'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입법이 추진되었음
-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¹²⁾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용역'은 여기 해당되지 않음
- (유사 입법례)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별도로 '용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용역거래 대금의 자산성) 현금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수단에 불과하고, 용역거래가 현금이라는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용역거래 대가인 현금이 '자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례)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골프장 법인회원권 매매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쟁점이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조문의 문언과 내용,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본건 규제대상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모든 거래가 아니라

1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을 말함

1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20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p. 38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유형의 거래로 제한된다고 보이므로 법원의 결론에 동의함

- 법조문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용역거래를 통해 보험회사 보유 자산에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모든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할 경우 사적 자치와 경영상 효율을 과도하게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특별히 위험성이 큰 유형의 거래로 금지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음
- 무엇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함¹³⁾
 -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것임

다. 김치와 같은 통상적 동산(動産)이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본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에 준하는 자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김치구매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자산'의 매매에서 이 사건 김치구매거래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함
 - (원고의 주장) 영업정책 및 경영활동 등의 필요에 따른 거래로서 본건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할 이유가 없고, 회계적으로도 자산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내지 접대비로 처리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김치구매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고, 원고의 영업정책, 경영활동 등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법원은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예시일 뿐이라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김치와 같은 통상적 유형의 동산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원고는 본건 규제의 대상 자산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대상이 되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및 '그에 준하는 자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일종의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됨
 -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은 보험회사의 주된 자산운용 과정, 즉 신용공여, 주식 및 채권 소유, 부동산 소유 등을 통해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도 일응 경청할 부분이 있다 사료됨
 - 그러나,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이라는 문언은 일반 어법상 반드시 제한적 수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극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건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라 사료됨

1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라.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 원고는 전산용역거래와 김치구매거래에 대해 각 피고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계약들은 동일·유사한 상황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으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함
 - (전산용역거래) 문제된 거래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토탈 아웃소싱 계약이고, 비교 대상 계약은 대부분 부분 아웃소싱 내지 시스템통합 용역계약이어서 위탁 대상의 내용, 규모, 업무 난이도, 기간 등이 달랐음
 - (김치구매거래) 본건 김치는 수작업 제조되어 전용 용기에 개별 포장되고 골프장 브랜드와 결합 판매된 것이나,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김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비닐포장의 통상적인 브랜드 김치임

- 법원은 먼저 아래와 같이 관련 법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구매거래 모두 원고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음
 -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공정거래법의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함¹⁴⁾
 -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음¹⁵⁾

- 피고는 보험업법의 ‘정상가격’은 보험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다른 공정거래법의 ‘정상가격’과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i) 공정거래법(상당히 유리한 조건)보다 보험업법(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요건이 더 엄격하고, (ii)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유사한 상황을 상정한 거래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함

- 현실에서 사적 거래의 조건은 제반 여건이나 협상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사의 유·불리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 거래 설정과 거래조건의 유·불리 판단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 보험업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더라도 수법자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판단기준과 증명책임을 적용한 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사료됨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을 인용함

1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을 인용함



4. 시사점

- 대상판결은 ‘용역의 거래’의 해석을 넘어, 비록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규제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범위를 판단할 때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열거된 각 거래유형의 개념적 표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계약상 채권의 불행사가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본건 규제의 문언상 타당한 결론이라 사료됨
-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비용 절감을 위한 백오피스(Back office) 기능의 외부위탁이나 핀테크(FinTech)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형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음
 -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출연한 재원을 관리하는 보험회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활력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됨
- 대상판결은 또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의 의미를 규명하고,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분명히 함
 - ‘정상가격’에 관한 금융감독당국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¹⁶⁾과 같이 보험업법령에 구체적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6)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5호) III.2.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하 생략>